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3
------------	-----

제출년월일 : 1995년 5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95. 1. 1 개정된 지방세 조례 내용증
 - 94.12월 지방세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천재동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 제정 규정 삭제
 - 현행 조례에서 천재동으로 인한 감면시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정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 조치
-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의 명확화
 - 종전에는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한하여 납기한이 연장되고,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 할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 납부 · 통지 · 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함
- 감면시 신고규정 삭제
 - 감면시 신고규정을 지금까지 조례의 세목별에 규정하였으나
 - 감면에 관한 신청규정은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였음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제1항

□ 기타 참고자료 : 별첨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제9조 및 제9조의2의'를 '제9조의'로 한다.

제7조의 조제목을 '천재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전'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하고, '납기한의'를 '기한이 만료된 날의'로 하고,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납기한의'를 '기한의'로,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를 '연장된 기한내에'로, '납기한을'을 '다시'로 하며, 동조제5항중 '납기한의'를 '신고납부기한의'로,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를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조제목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와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20조의 조제목중 '자진신고납부'를 '신고납부'로 하며, 제21조는 삭제한다.

제23조의 조제목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를 '법 제127조 내지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29조의 조제목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한다.

제38조의 조제목을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으로 하고,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를 '비과세 받고자'로 하며, 제41조는 삭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